##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543

발의연월일: 2025. 4. 2.

발 의 자: 김소희 · 김미애 · 김형동

김상훈 • 조지연 • 인요한

우재준 • 조경태 • 서일준

김은혜 · 김예지 · 김기웅

한지아 · 최수진 · 김장겸

김선교 · 엄태영 · 주호영

김성원 의원(1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원청 기업도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와 산업재해 예방 을 위한 상생적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의 근거 규정이 부재함.

이에 내국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협력업체 등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이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안전점검 등에 대한 원청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 100조의33 신설).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3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33(상생적 산업재해예방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업체 등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이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00조의33(상생적 산업재해예
	방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내
	국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업체 등에 지출하는
	<u>경우 그 지출금액의 100분의 3</u>
	(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
	<u>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u>
	금액을 해당 지출이 이루어지
	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
	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